

노·사 협의체 회의

2022. 06. 03.

| 결 | 작성 | 승인 | 승인 |
|---|--|---|---|
| 재 |  |  |  |
| | 안전관리자 | 근로자대표 | 사업주대표 |

오산 서동 서1구역 A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노·사 협의체 회의



노·사 협의체 회의

전회차 심의내용,의결사항 및 협의내용

전회차 의결 및 결정사항

| 심의·의결사항 | 의결 및 결정사항 | 심의·의결 결과 (※ 결과 기록 유지) | 비고 |
|--|---|--|----|
| <p>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의 제1호)</p> | <p>의결사항 : 작업허가서의 작성 결정사항 : -18EA 공종에 대한 작업허가서 제출 승인 작업실시의 건 -작업허가서 이행 여부 수시확인</p> | <p>★찬성: 7명, 반대: 3명 -18EA 공종에 대한 작업허가서 제출 승인 작업실시의 건 -작업허가서 이행 여부 수시확인</p> | |
| <p>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의 제2호)</p> | <p>의결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개정 결정사항 : - 신규업체 투입시 노사협의체 구성 변경 실시</p> | <p>★찬성: 10명, 반대: 0명 - 신규업체 투입시 노사협의체 구성 변경 실시</p> | |
| <p>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의 제3호)</p> | <p>의결사항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교육 결정사항 : - 장비기사 월 1회 별도 교육 실시 - 안전교육 실시시간 7시 10분, 13시2회 실시</p> | <p>★찬성: 10명, 반대: 0명 - 장비기사 월 1회 별도 교육 실시 - 안전교육 실시시간 7시 10분, 13시 2회 실시</p> | |

전회차 의결 및 결정사항

| 심의·의결사항 | 의결 및 결정사항 | 심의·의결 결과 (* 결과 기록유지) | 비고 |
|--|--|---|----|
| <p>4.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의 제4호)</p> | <p>의결사항 : 배치전 및 특수건강검진 실시 결정사항 : - 22년 4월 18일 현장방문 검진 실시 예정 - 코로나19 관련 소독 매주 월요일 11시</p> | <p>★찬성: 10명, 반대: 0명 - 22년 4월 18일 현장방문 검진 실시 예정 - 코로나19 관련 소독 매주 월요일 11시</p> | |
| <p>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 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의 제5호)</p> | <p>의결사항 :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우선보고 및 보고서 제출 결정사항 : -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우선보고 및 보고서 제출</p> | <p>★찬성: 10명, 반대: 0명 -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우선보고 및 보고서 제출</p> | |
| <p>6. 산업재해(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의 제6호)</p> | <p>의결사항 : 산업재해 안전교육 실시 결정사항 : 산업재해 안전교육 실시</p> | <p>★찬성: 10명, 반대: 0명 산업재해 안전교육 실시</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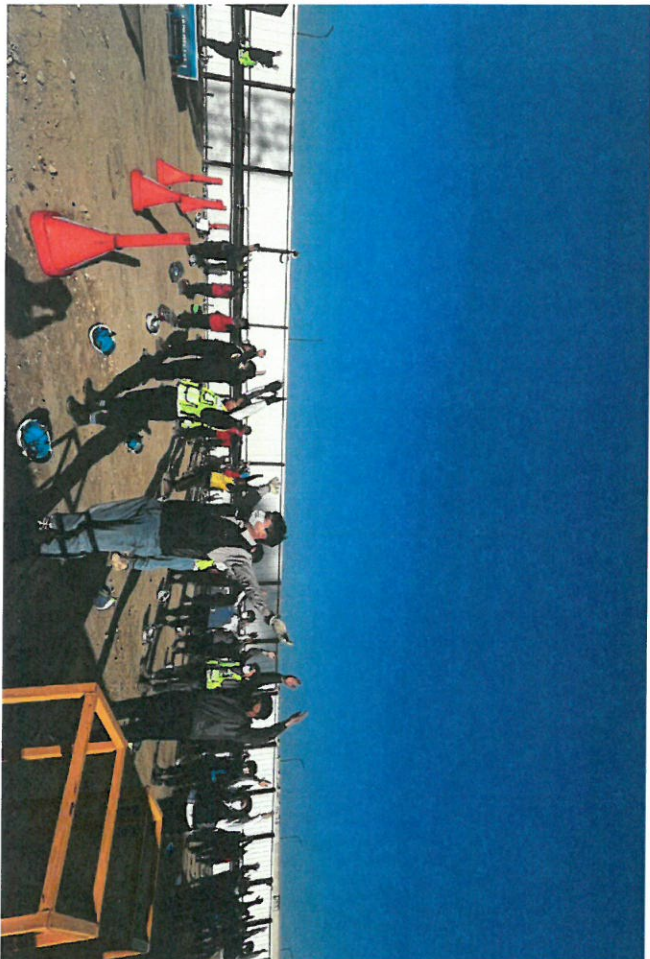
전회차 의결 및 결정사항

| 심의·의결사항 | 의결 및 결정사항 | 심의·의결 결과 (※ 결과 기록 유지) | 비 고 |
|---|--|---|-----|
| <p>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의 제7호)</p> | <p>의결사항 : 유해위험기계기구 반입 결정사항 : - 최초 반입전 반입신청서 제출 점검 및 매월 1회 공도구 점검</p> | <p>★찬성: 10명, 반대: 0명 - 최초 반입전 반입신청서 제출 점검 및 매월 1회 공도구 점검</p> | |
| <p>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의 제3호)</p> | | | |
| <p>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의 제4호)</p> | | | |

전회차 협의사항

| 노사협의체 협의사항 (산업법 시행규칙 제79조 2항) | 협의내용 | 협의 결과 | 비고 (참고기준) |
|---|--|---|--------------|
| 1. 작업의 시작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의 제1호) | 현장 작업시간 변경(환양) 안전조회 : 07:00 실시 작업 시작시간: 07:10 휴게시간 : 11:30 ~ 13:00, 15:00 ~ 15:30 작업종료 : 17:00 | 현장 작업시간 변경(환양) 안전조회 : 07:00 실시 작업 시작시간: 07:10 휴게시간 : 11:30 ~ 13:00, 15:00 ~ 15:30 작업종료 : 17:00 | |
| 2. 작업장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의 제2호) | | 이동식 화장실 #1번 Gate 부근 설치 예정 | |
|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의 제3호) | | | |
|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의 제4호) | | | |
|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의 제5호)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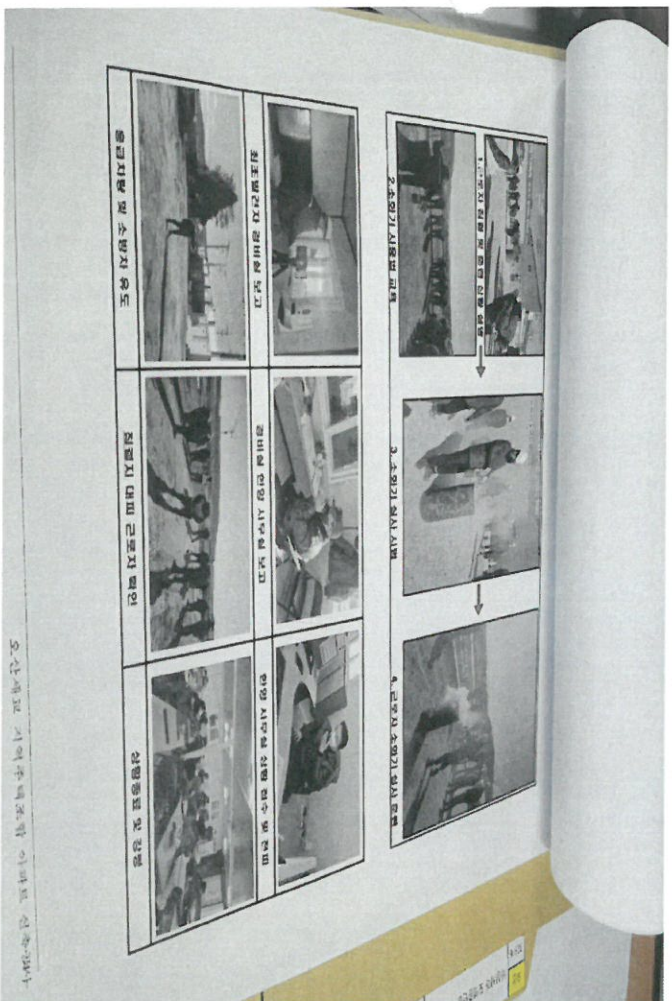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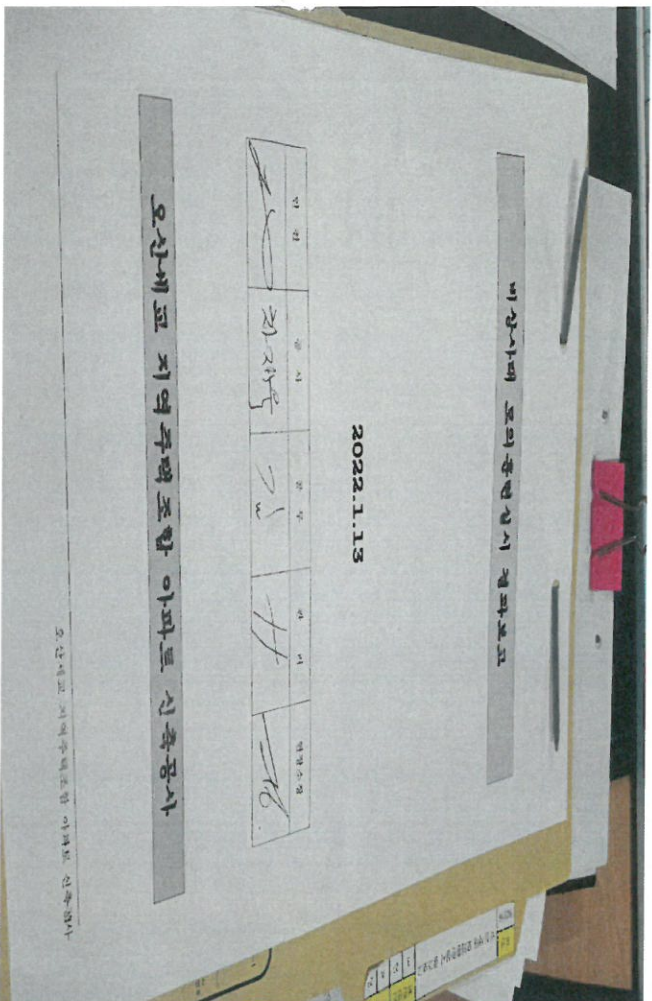
1. 작업의 시작시간



2. 작업장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전화차 Feed-Back

1. 작업허가서의 작성(PTW)

사전 작업 허가서 (PERMIT TO WORK)

오산 시흥시각구역 A20L 공동주택 건설현장

| | | | | | |
|------|-----------|-----------|-----------|----|----|
| 발급처명 | (주) 오산인원씨 | 작업자(발급처명) | 정기환 | 직업 | 선장 |
| 작업일 | 22.04.08 | 작업지(주소) | 진주동 109 | 직위 | 선장 |
| 작업장소 | 현주내 | 발급처(발급자) | 정기환 | 직명 | 선장 |
| 작업기간 | 22.04.08 | 수업지(발급주소) | 현주내 (109) | 직명 | 선장 |

▶ **작업자의 정보**

| | | | |
|----|-----|----|----|
| 이름 | 정기환 | 계급 | 선장 |
| 성명 | 정기환 | 직종 | 선장 |
| 직종 | 선장 | 직명 | 선장 |
| 직위 | 선장 | 직명 | 선장 |

▶ **이행방안 및 주의사항**

| | |
|------|---|
| 이행방안 | 작업자는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며, 작업 중에는 안전을 위해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합니다. |
| 주의사항 | 작업 중 화재 발생 시 비상 대피 절차를 숙지하고, 작업 중 화재 발생 시 즉시 소방서에 신고하고 대피합니다. |

2. 안전보건관리 규정 게시

안전보건관리규정

발급처명: 오산인원씨 (주) | 업무일: 2022.04.08 | 업무장소: 현주내

| | | | | |
|----|----|----|----|----|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구분 |

발급처: 오산인원씨 (주) | 담당: 정기환 | 직위: 선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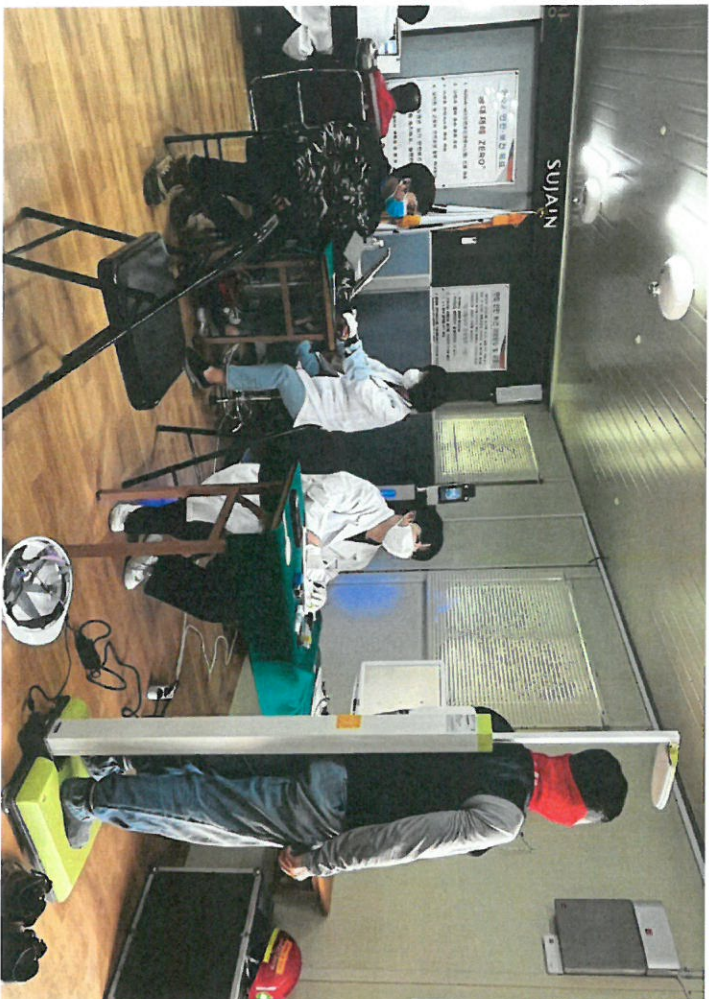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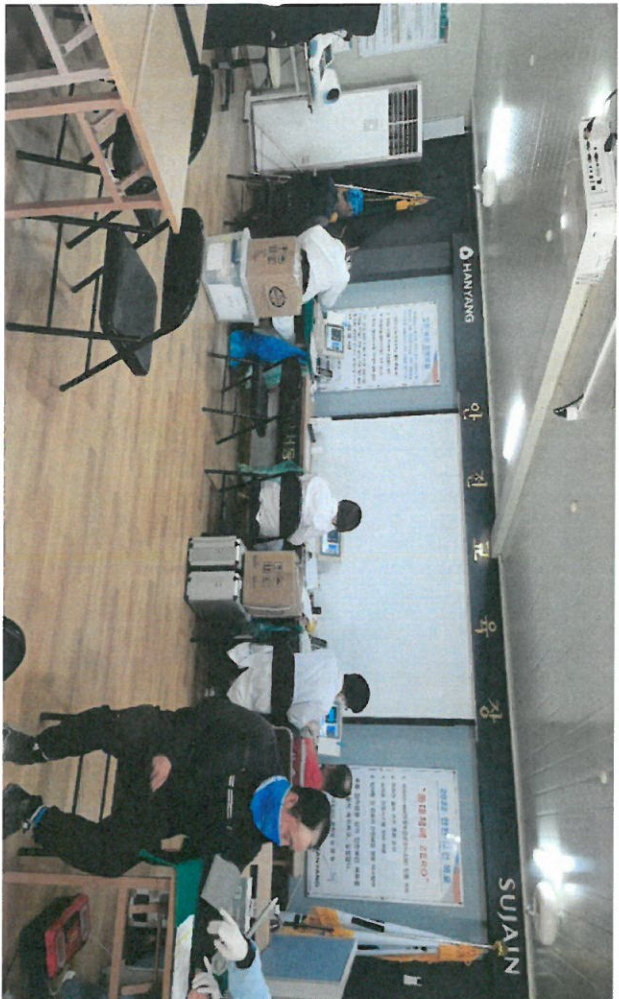
3.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교육



4. 작업환경측정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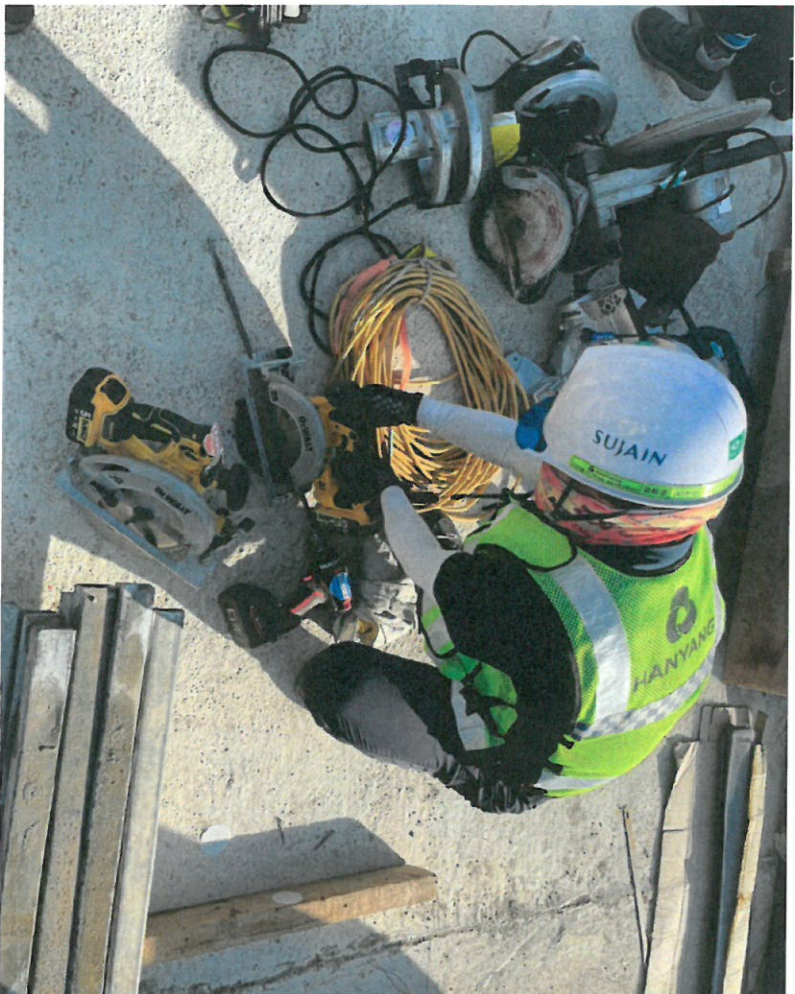
5. 특수건강검진 실시



6. 산업재해 안전교육 실시



7. 유해 위험기계기구 반입시 점검



8. 1번게이트 옆 화장실 비치의 건



9. 타사 중대재해 사례 전파

재해 사례 외

이 페이지는 '재해 사례 외'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다른 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 사례는 제목, 개요, 원인, 결과, 그리고 예방 대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 2014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SK건설 사옥 화재

2014년 11월 21일 오후 1시 30분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SK건설 사옥 1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15층 사무실에서 사용 중인 전기 콘센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재로 인해 15층 사무실 전체가 소실되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2. 2015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동 SK건설 사옥 화재

2015년 10월 12일 오후 1시 30분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동 SK건설 사옥 1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15층 사무실에서 사용 중인 전기 콘센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재로 인해 15층 사무실 전체가 소실되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3. 2016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동 SK건설 사옥 화재

2016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동 SK건설 사옥 1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15층 사무실에서 사용 중인 전기 콘센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재로 인해 15층 사무실 전체가 소실되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페이지는 '재해 사례 외'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다른 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 사례는 제목, 개요, 원인, 결과, 그리고 예방 대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회차 심의내용,의결사항 및 협의내용

심의,의결사항

| 심의·의결사항 | 의결 및 결정사항 | 심의,의결 결과 (※ 결과 기록 유지) | 비고 |
|--|--|--------------------------|----|
| <p>1.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의 제1호)</p> | <p>의결사항 : 1-3-5운동 우수팀 포상의 건 결정사항 :</p> | <p>★찬성: 10명, 반대 : 0명</p> | |
| <p>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의 제2호)</p> | <p>의결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조직도 개정 의 건 결정사항 : 2.1 근로자대표 선정의 건 2.2 근로자의원 선정의 건</p> | <p>★찬성: 10명, 반대 : 0명</p> | |
| <p>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의 제3호)</p> | <p>의결사항 : 3진 아웃제도 도입의 건 결정사항 : 3.1 1차 경고, 2차 교육, 3차 귀가조치</p> | <p>★찬성: 10명, 반대 : 0명</p> | |

심의,의결사항

| 심의·의결사항 | 의결 및 결정사항 | 심의,의결 결과 (※ 결과 기록유지) | 비고 |
|--|--|-------------------------|----|
| <p>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의 제4호)</p> | <p>의결사항 : 작업환경 측정 및 노사합동점검 실시 결정사항 : 21년 하반기 측정 (21.12.09) 22년 상반기 측정 (22.05.14) 22년 하반기 측정 예정 (22.11월 예정) 근로자 대표 작업환경측정 참여요청 가능</p> | <p>★찬성: 10명, 반대: 0명</p> | |
| <p>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 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의 제5호)</p> | <p>의결사항 : 특수(배치전) 건강검진 실시 권 결정사항 : 22.06.02 특수건강검진 실시 완료 22.12월예정(근로자 대표 요청시 참여가능)</p> | <p>★찬성: 10명, 반대: 0명</p> | |
| <p>6. 산업재해(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의 제6호)</p> | <p>의결사항 : 중대재해 전파의 권 결정사항 : 6.1 타사 중대재해 사례 첨부 참조</p> | <p>★찬성: 10명, 반대: 0명</p> | |

심의,의결사항

HANYANG | SUJAIN

[동종업 탁사 중대재해 발생일련]

성강종합건설 용인 공장 신축 현장 낙하 사고 4사

안전기록팀
'22.06.02, 13:30

□ 시공사 : 성강종합건설(주) | 2021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324위

□ 현장개요

- 현 장 명 : 케이피빅 용인 제2공장 신축공사(경기도 용인시)
- 공사금액 : 92억

□ 재해내용

'22.06.01(수) 09시 아문경 공장 신축공사 중 펌프카 아웃리거 하부 지반 붕괴로 중심을 잃고 넘어진 펌프카 암송권에 기초 버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후두부를 가격 당해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한 사고

□ 재해사진



□ 피해상황

> 인적피해 : 1명 사망

> 물적피해 :

□ 사고원인 추정

- > 토시 붕괴 위험지반(절토 및 성토 선단부 등)에 펌프카를 배치한 무리한 작업 실시
(절토면에서 약 1.5M 이격하여 아웃리거 설치, 하부 절토면은 기울기 90도)
- > 아웃리거 설치 구간 지반의 지지력 및 지반상태 확인미흡

□ 당시 현장 조치사항

- > 사고 사례 전파 및 펌프카 아웃리거 설치시 단부에 중량인 이격 거리 유지
- > 절토 및 성토 작업시 인식력에 따른 기준 준수
- > 타사 사례를 위험성평가에 반영하여 펌프카 재해 예방 대책 수립

1. 작업계획서 전일 제출 철저
2. 장비안착구간 사전 정비 하여 아웃리거 설치 위치 확인
(작업계획서에 첨부요망)
3. 절성토 구간 아웃리거 설치금지
4. 붐하부 근로자 출입금지

★관성: 10명, 반대: 0명

심의를의결사항

HANYANG | SUJAIN

[동종업 타사 중대형에 발생일련]

SK에코플랜트 안전 투원시티 주상복합 낙하 사고 件

안전기발팀
22.06.02. 13:30

□ 시공사 : SK에코플랜트(주) [2021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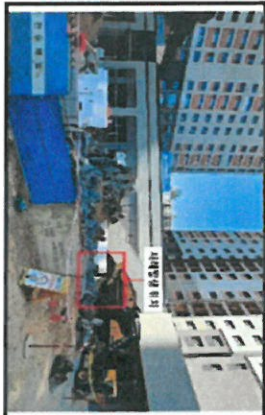
□ 현장개요

- 원 장 명 : 서구 투원시티 주상 5·0블럭 주상복합 신축(안전 서구 기정동)
- 공사금액 : 4,372억
- 공사규모 : 지하4층, 지상47층(9계동) / 공동주택 1,789세대, 오피스텔 529실)

□ 재해내용

'22.06.01(수) 14시 05분경 굴삭기를 사용하여 조경석 옮기 작업 진행 중 흙을 담은 굴삭기 버킷이 스윙 중에 붐대에서 탈락되어 낙하 되면서 허부에서 작업하고 있던 재해자가 맞아 사망함

□ 재해사진



□ 피해상황

- > 인적피해 : 1명 사망
- > 물적피해 :

□ 사고원의 추정

- > 굴삭기 버킷 낙하 위험구간 출입
- > 굴삭기 버킷 이탈방지 안전면 미제결

□ 당사 현장 조치사항

- > 시계 전파
- > 굴삭기 버킷 이탈방지편은 반드시 체결 후 작업 시행
- > 타사 사례를 위험성평가에 반영하여 굴삭기 작업구간 접근제한 조치 및 버킷 이탈방지 안전편은 반드시 설치하도록 안전대책에 반영

1. 작업계획서 전일 제출 철저
2. 일일 장비안전점검 실시
3. 안전핀 설치 위치 확인 및 웨빙띠 설치
4. 안전핀 설치 근로자 확보

★찬성: 10명, 반대: 0명

심의를결사함

[동종업 탁시 중대재해 발생일련]

강주 중흥S클래스 & 두산위브더제니스 현장 낙하 사고 4사 인지기원팀
'22.05.24, 11:30

□ 시공사 : 중흥토건(주), 두산건설(주) [2021년 시공능력평가 17위, 28위]

□ 현장개요

- 연 장 명 : 금남로 중흥S클래스 & 두산위브더제니스 현장(영주영역시 임종)
- 공사기간 : 2020년 09월 ~ 2024년 02월
- 공사규모 : 14개동(지하 3층, 지상 39층), 아파트 2240세대/ 오피스텔 250실
- 발 주 자 : 임흥(유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재해내용

'22.05.24(화) 09시 22분경 콘크리트 타설 작업중 펌프카 붐대 접합부위가 파단되면서 낙하(4M높이) 하여 아무에서 작업중이던 타설공을 타격하여 사망한 재해

□ 현장사진



□ 피해상황

- > 인적피해 : 1명 사망
- > 물적피해 :

□ 사고원인 추정

- >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 강체의 피로응력으로 인한 파단
- > 고용노동부 경찰 등 사고원인 조사 중

□ 당시 현장 조치사항

- > 재해사례 전파
- > 콘크리트 펌프카 등 자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시에는 작업전 반복적인 충격하중으로 응력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기계의 생산연도, 작업량, 정비이력 등을 사전 검토하고 이상 발견 또는 예상시에는 모강 또는 교체
- > 엔드호스 길이는 초과하여 사용을 금지하며 붐대 아무에는 작업자가 위치하지 않도록 관리

1. 작업계획서 전일 제출 철저
2. 장비안착구간 사전 정비 하여 아웃 트리거 설치 위치 확인
3. (작업계획서에 첨부요망) 절성토 구간 아웃트리거 설치금지
4. 붐하부 근로자 출입금지

★관성: 10명, 반대: 0명

심의,의결사항

HANYANG | SUJAIN

[동종업 타사 중대재해 발생일지]

민목건설 예곡기암장 개선사업 현장 열차 사고 件

안전기획팀
*22.05.20. 11:30

□ 시공사 : 민목건설(주) (2021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908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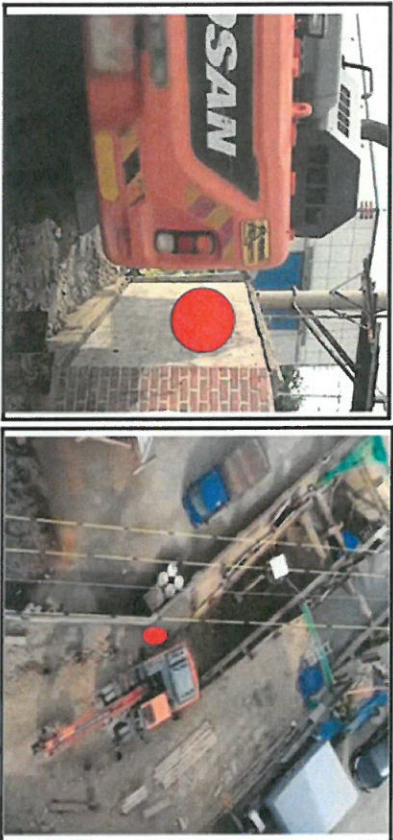
□ 원장개요

- 연 장 명 : 예곡기암장 개선사업(정원시 상수도 사업소 발주)
- 공사금액 : 205억

□ 재해내용

*22.05.18(수) 기시 50분경 경남 함안군 칠원읍의 예곡기암장 개선사업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 공급을 위해 굴착기의 덩크트럭을 이용한 도시 반출 작업 진행 중 동점공이 굴착기와 벽면 사이에 이동하다 회전하는 굴착기 후면부와 벽면 사이에 끼임

□ 재해사진



□ 피해상황

- > 인적피해 : 1명 사망
- > 물적피해 :

□ 사고원인 추정

- > 굴착기 회전 위험 변경내 동점공이 접근하여 굴착기의 회전하는 카운터웨이트와 벽면 사이에 끼임
- > 작업구간내 통제 유도원 미배치

□ 당시 현장 조치사항

- > 재해사태 전파
- > 굴착기 등 건설기계 작업구간 출입금지조치 실시 및 접근경보 스미드 안전시스템 적용
- > 건설기계 작업 위험성평가시 사고사례를 반영하여 대책 수립 및 적용
- > 지양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시 열차예방 대책 반영

1. 작업계획서 전일 제출 철저
2. 장비작업구간 출입통제 시설 설치
3. 장비작업구간 주변 타작업 동시작업금지

★찬성: 10명, 반대: 0명

심의를의결사항

HANYANG | SUJAIN

[특사 중앙재해 발생보고]

에스오일 울산 울산공단 공장 폭발 사고 件

안전기행팀
22.05.20. 13:40

□ 회사 개요

▪ 회 사 명 : 에스오일(주) (매출 18조 8,296억원, 2020년 기준)

| 구분 | 사업장명 | 대표자 | 근로자수 | 업종 | 주최(원)사 |
|----|---------|----------------|--------|----------|----------------|
| 기업 | 에스오일(주) | 후세인 사 원-카타니 | 3,222명 | 원유 정제처리업 | 서울 미포구 경곡동 471 |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여부 해당 미해당

□ 재해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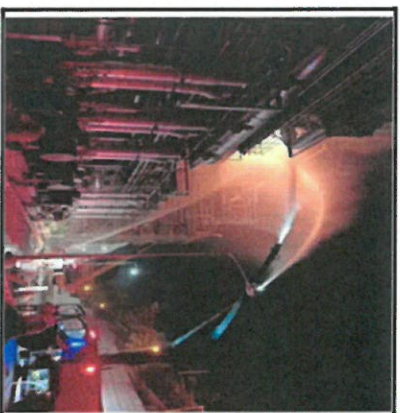
22.05.19(목) 20시50분경 울산시 울주군 울산공단 에스오일 울산공장내 휘발유 첨가제를 만드는 공정에서 압축 밸브 오작동으로 긴급 모수가 이뤄진 뒤 시운전을 하던 중 폭발 사고가 발생

□ 피해상황

> 인적피해 : 사망 1명, 부상 9명(중상 4명, 경상 5명)

> 물적피해 :

□ 재해사진



□ 사고원인(추정)

> 최종 진원 후 경찰, 소방서, 노동부 조사 예정

1. 화재취급작업계획서 전일제출 (미제출시 작업금지)
2. 화기감시자 배치
3. 소화기 3.3kg 2개 배치
4. 용접작업등 화기취급작업시 불티비 산방지포 설치

★찬성: 10명, 반대: 0명

심의를결사함

HANYANG | SUJAIN

[동종업 타사 중대재해 발생일림]

○○건설 병원 중축 현장 추락 사고 件

안전기록팀
22.05.16. 13:30

□ 시공사 : ○○건설

□ 현장개요

- 연 장 명 : 연세 니을암 요양병원 중축 공사
- 공사금액 : 50억 이상

□ 재해내용

'22.05.14(토) 13시 50분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병원중축공사현장에서 1층에서 5층으로
지체인양 작업중이던 하도금업체 소속 근로자가 5층에서 추락하여 사망

□ 재해사진



□ 피해상황

- > 인적피해 : 1명 사망
- > 물적피해 :

□ 사고원의 추정

- > 지체 인양 및 번입을 위해 대형개구부 상부 안전난간대를 해체 후 중앙로 지체 인양시 무게중심을
찾고 추락

□ 당시 현장 조치사항

- > 사고사태 전파
- > 지체 번입구 작업시 안전난간대를 임의 해체 금지, 불기피하게 안전난간대 해체시에는 안전대 부착
실행 확보 및 안전고리 체결 교육/확인 실시
- > 지체 인양 및 번입구 등 추락 위험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시 사고 사례 반영하여 대책 수립 및 교육

1. 안전시설 무단 해체 절대금지
2. 안전시설 무단 해체 근로자 즉시
퇴출
3. 안전시설 해체 필요시 안전관리자
4. 안전시설 해체후 작업시 안전대 부
착설비 설치 철저

★관성: 10명, 반대: 0명

심의,의결사항

HANYANG | SUJAIN

[동종업 타사 중대재해 발생알림]

CJ대한관광(주) 제주 관광호텔 신축 현장 합착 사고 件

안전기행팀
22.05.11. 10:15

□ 시공사 : CJ대한관광(주) 건설부문 (2021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46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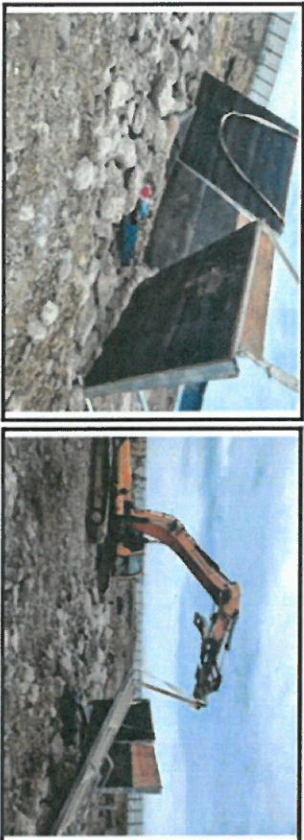
□ 현장개요

- 현 장 명 : 제주 외도이동 관광호텔 신축공사
- 공사금액 : 529억
- 공사규모 : 지하 2층, 지상4층 호텔
- 공사기간 : 2021. 03. ~ 2024. 02.

□ 재해내용

‘22.05.10(화) 10시 55분경 암절취시 소음 및 비산 방지를 위해 기존에 설치된 편별형 방음벽(가로 2.45m, 세로3.8m)이 바람에 의해 넘어가 있던 것을 굴삭기의 우크에 돌격이른 연결하여 세워놓고, 돌격이른 해체하고 이동하던 중 방음벽이 넘어지며 피재자가 걸려 사망한 재해임

□ 현장 사진



□ 피해상황

- > 인적피해 : 1명 사망
- > 물적피해 :

□ 사고원의 추정

- > 종량물인 방음벽 설치시 전도방지조치 및 위험구간 출입통제 미흡
- > 고용노동부 및 경찰 조사 진행중

□ 당사 현장 조치사항

- > 재해사례 전파
- > 방음벽 등 종량물로서 전도 위험 자재는 반드시 전도 방지 조치를 실시하고 종량물 취급계획 수립
- > 전도 위험 자재는 위험성평가시 상기 사고 사례 반영하여 대책 수립

1. 종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제출
2. 자재 적재시 원형파이프등은 2단 적재금지
3. 자재 적재시 관리감독자가 위치 선정하여 해당 위치에만 적재
4. 지게차 사용시 신호수 배치하여 오와 열을 맞춘 적재 철저

★찬성: 10명, 반대: 0명

심의를의결사항

HANYANG | SUJAIN

[동종업 타사 중대역 발생일련]

다음동업건설 전인 물류창고 신축 현장 추락 사고 件

안전기획팀
'22.05.09. 11:30

□ 시공사 : ㈜다음동업건설 (2021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832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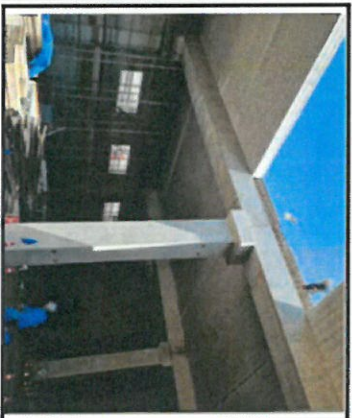
□ 현장개요

- 현장명 : (주)다음동업건설
- 공사금액 : 87억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1개동(연면적 8,447㎡, 물류창고)
- 공사기간 : 2021. 03. 01. ~ 2022. 06. 15. (공정률: 약 85%)

□ 재해내용

'22.05.09(목) 13시 20분경 지상 1층 PCIPrecast Concrete(스캐프 인양 및 인착 후 쇠지렛대를 이용 하여 위치 조정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근로자가 인양 게구부(φ=75mm)를 빠져 사망한 재해임

□ 현장 사진



□ 피해상황

- > 인적피해 : 1명 사망
- > 물적피해 :

□ 사고원인 추정

- > PC 조정작업을 위한 고소작업시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 안전고리 미체결
- > 고용노동부 및 경찰 조사 진행중

□ 당시 현장 조치사항

- > 재해사례 전파
- > 고소 작업시 추락예방시설(안전난간대, 추락예방 등)을 설치하고 필요시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의 안전고리를 반드시 체결하도록 권고
- > 고소에서 양중작업을 통한 지체 인양 및 설치 작업시 사고사례를 위험성평가에 반영하여 대책 수립

1. 작업중 위험구간에 안전시설 설치
2. 필요시 안전팀에 즉시 통보
3. 작업중 위험구간 발생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철저
3. 위험구간 위험성평가 반영 철저

★찬성: 10명, 반대: 0명

심의를결사함

[동종업 타사 중대재해 발생일림]

성도건설산업 광양제철소 설비 철거 현장 추락 사고 4건

안전기원팀
22.04.08. 13:30

□ 시공사 : 성도건설산업

□ 현장개요

▪ 현장 명 : 광양 SMO 설비해체 및 철거공사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동)

▪ 공사금액 : 284억원

▪ 공사기간 : 2021.11.15 ~ 2023.11.14

□ 재해내용

'22.04.07(목) 13시 57분경 전남 광양시 금호동 천연가스 생산 공장 120동 해체공사 현장 피이프랙 워 전선케이블 트레이에서 폐전선 해체 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해체한 폐전선 다발을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지상으로 내린 뒤 다음 작업 위치로 이동하던 중 기울어져 있던 스틸 그레이딩 발판을 밟으면서 생긴 계구부를 통해 약 12m 아래 구조물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

□ 재해사진



□ 피해상황

> 인적피해 : 1명 사망

> 물적피해 :

□ 사고원인 추정

- > 케이블 해체 후 양중작업 중 케이블 끝지락이 크레인에딩에 간섭되어 그레이딩을 틀어 올린 계구부가 형성되었으며 재해자는 케이블 양중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상부를 주시하고 있던 상태에서 계구부를 밟았으나 밟아고 이동하면서 추락
- > 고용노동부 및 경찰 조사 진행중

□ 당시 현장 조치사항

- > 고소작업시 항상 안전대 부착상태에 안전고리끼 체결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권리감독 실시
- > 해체 작업시 사고시각 위험성 평가 반영 후 안전대책 이행 여부 확인

1. 작업중 위험구간에 안전시설 설치
2. 필요시 안전팀에 즉시 통보
3. 작업중 위험구간 발생시 안전대 부
4. 착설비 설치 철저
3. 고소작업구간 작업발판 설치 철저
4. 위험구간 위험성평가 반영 철저

★관성: 10명, 반대: 0명

심의,의결사항

| 심의·의결사항 | 의결 및 결정사항 | 심의,의결 결과 (※ 결과 기록 유지) | 비고 |
|---|---|--------------------------|----|
| <p>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의 제7호)</p> | <p>의결사항 : 산업재해 발생정보 알림 건 결정사항 : 7.1 22년 3월 회상제해 1건 누적 (안전계시판 및 안전교육장 등 게시)</p> | <p>★찬성: 10명, 반대 : 0명</p> | |
| <p>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의 제3호)</p> | <p>의결사항 : 유해위험기계기구 반입 시 결정사항 : 8.1 최초 반입 시 공도구 점검 실시 (타워크레인 1호기 앞 8시 ~ 9시) 8.2 매월 1회 공도구 안전점검 실시 8.3 점검필증 부착된 공도구에 한하여 사용</p> | <p>★찬성: 10명, 반대 : 0명</p> | |
| <p>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의 제4호)</p> | <p>의결사항 : 근로자 안전 보건 증진의 건 결정사항 : 9.1 6월 15일 건강관리실 앞 제빙기 설치 9.2 현장 내 이동식 화장실 2개소 설치 9.3 현장 내 흡서기 대피소 3개소 설치</p> | <p>★찬성: 10명, 반대 : 0명</p> | |

금회차 협의사항

| 노사협의체 협의사항 (산업법 시행규칙 제79조 2항) | 협의내용 | 협의 결과 | 비고 (참고기준) |
|--|--|-------|--------------|
| 1. 작업의 시작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의 제1호) | 안전조회 : 07:00 실시 시작시간 : 07:10 휴게시간 : 11:30 ~ 13:00, 15:00 ~ 15:30 작업종료 : 17:00 | | |
| 2. 작업장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의 제2호) | | | |
|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의 제3호) | | | |
|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의 제4호) | | | |
|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의 제5호) | | | |

건의사항

전회차 건의사항

| 구분 | 건의자 | 건의사항 | 대처방안 | 주관팀 |
|----|--------|--------------------|-----------|-----|
| 1 | 김천도 상무 | 1번 게이트 앞 화장실 설치의 건 | 화장실 설치 완료 | 관리팀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번 게이트 옆 화장실 설치의 건

-설치완료

금회차 건의사항

| 구분 | 건의자 | 건의사항 | 처리방법 | 비고 |
|----|-------------|--------------------|-------------------|----|
| 1 | 김경후(대성건설산업) | 근로자 휴게실 3개소 선풍기 설치 | 22.06.13까지 설치조치예정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감사합니다.

오산 서동 서1구역 A2B1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 합니다.